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56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인

변론 종결2020. 9. 17.

판결 선고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2. 1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2) C는 2013. 2. 1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은 2013. 8. 30.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11. 16. C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2015. 11. 17.부터 원고의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자금투자

1) 원고는 2013년경 영주시 E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였고, 당시 부족한 사업자금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투자받았다.

2) 피고는 2012. 12. 11.부터 2013. 2. 25.까지 5억 원을 C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고, 2013. 3. 22.부터 4. 1.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수익권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위 확인서에는 피고와 원고, 그리고 D이 각 날인하였다.

확인서

1. 원고에 차입되어 쓰고 있는 10억 원(차입기한 25개월)의 수익금 10억 원(질권설정되어 있음) 원고가 책임지고 원천징수세금 또한 원고가 책임진다. (차입 당시 구두로 약속하였기 때문)
 2. 입금별 25개월 넘어서면 추가되는 이율은 동일하게 해서 회사(원고)에서 지급하고 완납되었을 시 보유 지분 전체 30% 수익금 등 모든 권리는 무상으로 D이 지목하는 사람에게 양도한다.
 3. 만일 피고 수익금이 충족하지 못할 시 지분에서 배당으로 충족하고 나머지는 D이 지목하는 자에게 수익금 등 모든 권리를 무상 양도한다.
- 위 내용에 피고의 수익금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은 D 지고 확인서에 인감 첨부한다.

라. 원고의 수익금 지급

이후 E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8.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4억 5,000만 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9억 원만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7. 28. 10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앞서 본 1의 라.항), 2016. 8. 4. 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원고에게 수익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액에 해당하는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12억 3,000만 원[= (20억 원 - 9억 원) +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투자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의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수익금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2. 14. 피고에게 '피고의 수익금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은 D(이) 진다'는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 대표이사였던 D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20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4억 5,000만 원만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6호증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만을 투자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대가로 수익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천징수세금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수익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D이 이를 책임지고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원고 대표이사 D이 원고가 10억 원을 투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익금 지급 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20억 원의 거액이고, 투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원고의 재무제표와 법인 계좌를 비교해보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의 대표이사 취임 전후로 C에게 5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C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원고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이 10억 원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착오 또는 기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의 2013년도 주·임·종장기차입금명세서(을 제5호증)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오

판사이정현

판사김준영